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족연금 지급액 상향〉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2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유족연금 지급액 상향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6
(1) 유족연금 중복급여 지급률 상향(안 제56조제2항)	6
(2) 유족연금의 지급률 범위 상향 및 가입기간별 지급률 구간 세분화(안 제74조)	9
다. 관계 기관 의견	13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

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며,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 각 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유족연금 지급액 상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2 이상의 수급권을 가지게 된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이 아닌 다른 급여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받는 ‘중복급여 지급률’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안 제56조제2항),

유족연금의 지급률 범위를 기본연금액의 40~60%에서 50~60%로 상향하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지급률 구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	김선민의원안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생략)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② ----- ----- ----- -----.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u>100분의 30</u> 에 해당하는 금액	1. ----- ----- ----- <u>-100분의 50-</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제74조(유족연금액) -----

-----.

1.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1년 이상 12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20에 해당하는 금액
4. 가입기간이 13년 이상 14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30에 해당하는 금액
5. 가입기간이 14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40에 해당하는 금액
6.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16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50에 해당하는 금액
7. 가입기간이 16년 이상 17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60에 해당하는 금액
8. 가입기간이 17년 이상 18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70에 해당하는 금액

	9. 가입기간이 18년 이상 19년 미만 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80에 해당하는 금액 10. 가입기간이 19년 이상 20년 미만 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90 에 해당하는 금액 1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 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 는 금액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1) 유족연금 중복급여 지급률 상향(안 제56조제2항)

□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 일시금 등 총 4종으로 급여를 구분하고 있음.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¹⁾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함.
-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①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면서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이며, ② 가입기간이나 가입 대상기간²⁾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함.
-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

1) 단,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1953~1956년 출생자는 61세, 1957~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1964년 출생자는 63세, 1965~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됨.

2)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등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 한편 「국민연금법」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게 되면 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령연금+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하였다면,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 4월 현재 총 13만 9,040명이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기로 선택하였고,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합산된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약 53만 6천원으로, 2024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713,102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중복급여 조정제도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포기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분	유족연금 수급 포기 사례 (A=B+C)	수급 선택한 급여		월평균 급여액 (D=E+F)	유족연금액 × 30%의 월평균액(E)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 월평균액(F)
		노령연금(B)	장애연금(C)			
2024년 4월 현재	139,040	137,860	1,180	536	90	446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2 이상의 수급권을 가지게 된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이 아닌 다른 급여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복급여 지급률’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과 같이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지급률’을 20%p만큼 올리게 되면, 개별 수급권자의 급여액(월)은 평균적으로 약 6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유족연금의 ‘중복연금 지급률’을 20%p 인상하게 되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114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참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유족연금 중복연금 지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23	118	113	110	106	570	1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유족연금의 지급률 범위 상향 조정 및 가입기간별 지급률 구간 세분화(안 제74조)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및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됨.³⁾
-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20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으로 적용되는 ‘계단식 급여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3)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2024년 3월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족 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약 35만 7천원이고, 유족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4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비율은 약 74.9%로 나타나, 유족 연금의 급여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족연금 수급액 별 수급권자 현황 >

(단위: 명, %)

계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000,629	60,509	688,979	166,774	56,754	20,859	6,684	70	-	-
(100)	(6.0)	(68.9)	(16.7)	(5.7)	(2.1)	(0.6)	(0.0)	-	-

주: 2024년 3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에 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지급률 하한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으로써 유족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지급률 구간을 현행 3개(10년 단위)에서 11개(1년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계단식 급여체계’를 완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과 같이 유족연금의 지급률 하한이 상향 조정되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의 월평균 유족연금액은 약 8만원 증가하게 되어 유족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가입기간의 근소한 차이로 유족연금 지급률이 크게 달라지는 현행 ‘계단식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인 경우와 10년인 경우] 또는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9년 11개월인 경우와 20년인 경우]에 가입기간의 차이는 각각 1개월로 근소하지만, 유족연금

지급률의 차이는 각각 10%p이므로, 월평균 유족연금액은 최소 10만 2천원에서 최대 27만원까지 격차가 나타남.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비교 >

(단위: 명, 천원)

구분	10년 ^{미만}	10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7년 ^{미만}	17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19년 ^{미만}	19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023년도 기본연금액 (A)	806	849	889	871	876	885	878	883	892	900	889	1,192
지급률 (B)	현행 40%		50%									60%
	개정안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유족 연금액 (C=A×B)	현행 322.4	424.5	444.5	435.5	438.0	442.5	439.0	441.5	446.0	450.0	444.5	715.2
	개정안 403.0	424.5	453.4	452.9	464.3	477.9	482.9	494.5	508.4	522.0	524.5	715.2
	증가액 80.6	-	8.9	17.4	26.3	35.4	43.9	53.0	62.4	72.0	80.0	-

주: 신규 수급자 중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2023년 국회에 제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도 유족연금 개선을 위하여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40~60%에서 50~60%로 상향 조정하고, 가입기간별 지급률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유족연금 지급률 하한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지급률 구간을 현행 3개(10년 단위)에서 11개(1년 단위)로 세분화하게 되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694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참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세분화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76	566	673	801	952	3,469	694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매월 이행기가 도래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시점의 급여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지를 부칙 적용례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신중 검토

-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족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액 중복지급률 및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고려해 연금개혁 추진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